

독립기념관 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

1. 편의제공 대상 :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
2. 편의제공 신청 절차

가. 편의제공 내용 확인 :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

장애유형 및 정도		면접전형	추가 증빙서류
지체장애	상지	·전담 도우미 지원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	-
	하지	·전담 도우미 지원 ·휠체어 전용책상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	
뇌병변 장애		·전담 도우미 지원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면접위원 간 거리 근접(1.5m내외) 조정 ·면접시간 1.5배 연장	- 의사진단서(원본)
시각장애		·전담 도우미 지원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	-
청각장애		·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·면접위원 간 거리 근접(1.5m내외) 조정 ·응시요령 등 서면 제공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	-
		·면접시간 1.5배 연장	의사진단서(원본)

나.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 : 소정기간 내 시험 편의제공 신청서([【붙임2】 시험 편의 제공 신청서 서식](#)) 및 증빙서류 온라인 파일 제출(요청 시 응시대상자에게 개별 안내)

다. 편의제공 여부 결정 :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편의제공 여부 개별 안내

라. 증빙서류 원본 대조 : 시험당일 증빙서류 원본 확인

3. 편의제공 내용

편의제공사항	편의제공 내용
시험시간 연장	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시간 연장(1.5배)
장애인보조기구	시험운영과 시험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의 사용 허가
도우미	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를 배치

4.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가. (확인) 상단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증빙서류 확인

나. (증빙)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※ [【붙임2】 시험 편의제공 신청서 서식 참조](#)

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통해 조회 가능 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
다. (제출) 신청관련 서류는 각 전형별 응시대상자만 제출대상이며,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예정으로, 대상자는 안내사항에 따라 소정기간 내 서류 제출

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
2. 발급일자 :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3.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가.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
나.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

다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《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》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시
시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)	가.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○ 시력 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나.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다.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 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가.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○ 증상 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나.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다.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
※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소정기간 내 신청서 제출 요망

채용분야		채용전형	☐ 필기전형 ☐ 논술전형 ☐ 면접전형
성명		수험번호	
생년월일		연락처	응시자 : ※ 필수 기재 보호자 : ※ 필요시 기재
주소			
구분	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* 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		
증빙서류 (원본 또는 사본)	☐ 장애인증명서 ☐ 장애인등록증 ☐ 장애인복지카드 ☐ 의사진단서(원본) ※ 채용시험 당일 지참		
편의제공 요청사항	시험시간 연장	☐ 1.5배	
	별도 문제지 (택1)	☐ 별도 문제지 (☐ 82% ☐ 118% ☐ 150%)	
	별도 답안지 (택1)	☐ 대필 ☐ 별도 답안지 (☐ 118% ☐ 150%)	
	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허가	☐ 보조기구 명칭() ☐ 보조기구 사용 필요성 :	
	기타	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: 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:	
※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해당항목 '□'에 '☑'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
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. 20 . . .			
독립기념관장 귀하 성명(대리인) (서명 또는 날인)			